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에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·문화·예술·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(법률 제19766호, 2023. 10. 24. 공포, 2024. 10. 25. 시행)됨에 따라,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등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7.22. ~ 8.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관광도로의 관리계획)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
2. 관광도로의 기점, 종점 및 주요 통과지
3. 관광도로의 지정 필요성
4. 해당 관광도로와 인접한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및 결과
5.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·문화·예술·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
6. 관광도로의 경관 제고 및 조성에 관한 사항
7. 관광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
8. 관광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9. 관광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
10. 관광도로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7조의3(관광도로의 정보)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도로명, 기점,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
2. 교통량, 방문 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,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
3. 주변 관광지·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
4. 그 밖에 주차장,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

제47조의4(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(이하 이 조에서 “관광도로정보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관광도로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도로법」 제105조에 따른 도로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,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7조의2(관광도로의 관리계획)</u> <u>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</u> <u>2. 관광도로의 기점, 종점 및 주요 통과지</u> <u>3. 관광도로의 지정 필요성</u> <u>4. 해당 관광도로와 인접한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및 결과</u> <u>5.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·문화·예술·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</u> <u>6. 관광도로의 경관 제고 및 조성에 관한 사항</u> <u>7. 관광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</u> <u>8. 관광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</u> <u>9. 관광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u>

<신 설>

<신 설>

10. 관광도로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7조의3(관광도로의 정보)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도로명, 기점,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

2. 교통량, 방문 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,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

3. 주변 관광지·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

4. 그 밖에 주차장,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

제47조의4(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(이하 이 조에

서 “관광도로정보체계”라 한다)
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관계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
관광도로정보체계의 운영과 관
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
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
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운
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
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
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
따른 공공기관 및 「도로법」
제105조에 따른 도로협회 등과
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
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밖에
관광도로의 지정, 관광도로정보
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
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
다.

<신 설>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
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79